



건설산업기본법(협회관련)

건설업법개정법률공포 1996.12.30 법률 제5230호

제2장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

제9조 (건설업의 면허)

①일반 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종별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전문건설업의 등록)

- ①전문건설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건설교통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 등록증 및 건설업등록 수첩을 교부하

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 ①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면허를 받은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고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자의 면허를 중복받을 수 없다.
- ②제9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종의 전문건설업을 중복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할 수 있다.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①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제9조 제1항 또는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외에는 도급 받을 수 없다. 다만, 도급받는 당해 건설공사와

그 부대공사는 함께 도급받을 수 있다.

②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만을 도급받아 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 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일반건설업자가 도급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문건설업자는 2이상의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일반공사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
3.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 받은 경우.
4. 제1항단서 제2항단서 및 제3항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수수료)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한다.

- 1호 내지 3호 생략
4.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는자.
5.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하

는자.

제11장 별 칙

제93조 내지 제95조 생략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고 건설업을 영위한자.
2.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3조 생략.

제4조(기존가스시설 시공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시행당시 다음 각호의 등록한자는 법제 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가스 사업법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의 등록.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등록.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열사용기자재의 시공업의 등록

-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유지 관리업의 등록.
- 5. 건축법 제5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온돌 시공업의 등록.

제15조(기존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업종 및 업무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6조(경미한 건설공사등)

- ①법제 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협회관련)

입법예고 건설교통부 1997. 4. 22자.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업종별 공사업협회는 각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2장 건설업의 면허 및 등록

제5조(건설업의 업종등)

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업종과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의

- 1. <별표1>에 의한 건설업종 및 업무내용 중 일반 건설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설공사(이하 “일반공사”라 한다)는 1건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를 전문건설공사업자가 시공해야하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가스설비공사

나. 특정열사용 기자재 설치공사

다. 철강재설치공사

라. 승강기 설치공사

마. 철도케도 공사

바. 온돌공사

<별표1> 건설업의 업종별 업무내용(제5조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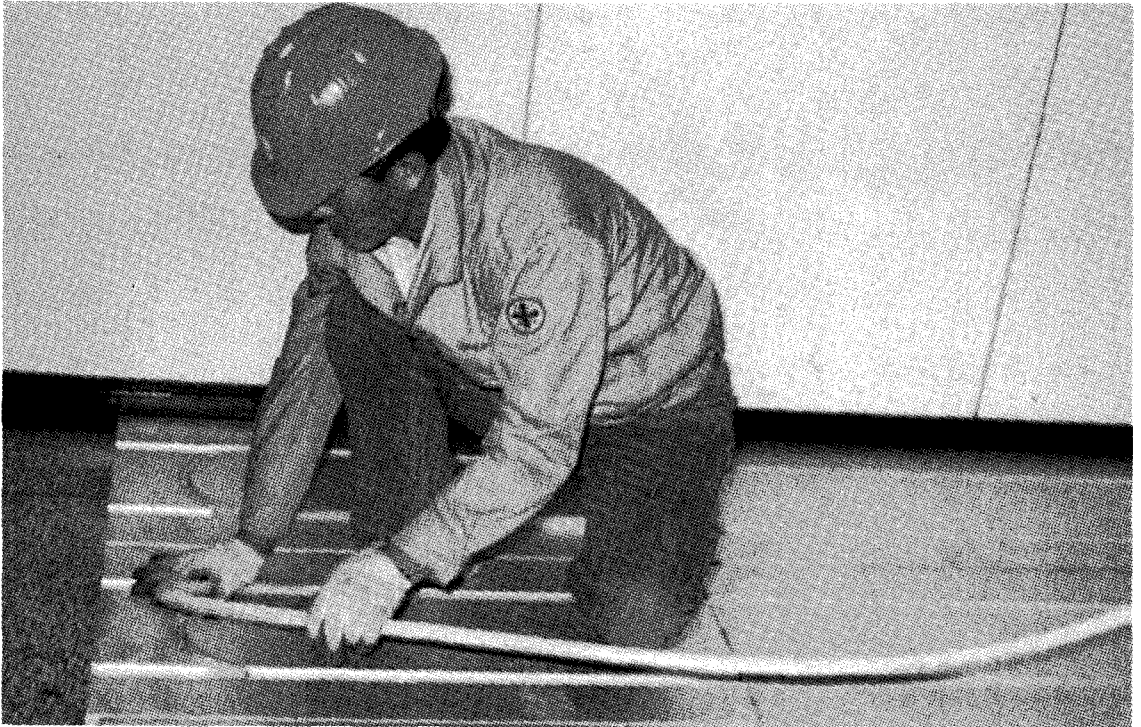
| 구 분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예시 | 비 고 |
|-------|----------|---------------|---------|--------|
| 전문건설업 | 29.온돌시공업 | 건축물에온돌을설치하는공사 | 온돌설치공사 | 총30개업종 |

<별표2>건설업 면허기준(제7조 1항관련)

| 업종 | 기술능력 | 자본금 | 시설장비 |
|-------|---|-----|--|
| 온돌시공업 | 국가자격법에 의한 온돌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자 또는 직업훈련 기관에서 양성교육을 받은자. | | 1 사무실(전용면적10제곱미터) 2. 파이프머싱, 파이프렌지 파이프리머, 용접기, 압력계측기, 전기테스트기, 각1대. |

제7조(건설업의 면허기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의 면허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 및 장비는 <별표2>와 같다.

제8조(전문건설업의 등록업종 및 등록기준)

①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은 <별표1>에 의한 건설업종중 다음 각호의 업종으로 한다.

1. 가스설비공사업(제1종내지 제5종)
2.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제1종내지 제5종)
3. 온돌시공업
4. 시설물 유지관리법

제19조(부대공사의 범위)

①법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다.

1.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로서 시공상 전문기술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공사.
2.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에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예정 금액이 전체공사금액의 2분지 1이상인 때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
3. <별표1>중 기계설비공사업, 온돌시공업,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및 가스설비공사업(2종내지 5종에 한함)에 속한 공사중 2이상의 업종에 속한 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그중 1개의 업종에 관한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도급받은 경우 나머지 업종에 속한다. ㉠